2013 이슈페이퍼 << 연구보고서 2013-14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본 여성의 삶과 건강, 그리고 경제활동의 변화

수행과제명 • 201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과제책임자 • 주재선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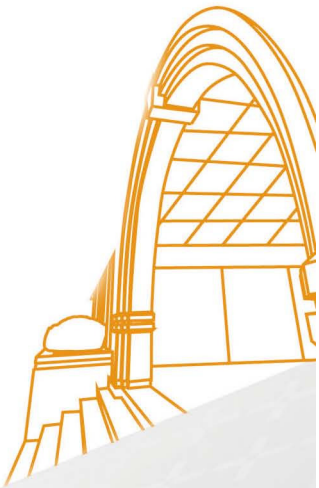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본 여성의 삶과 건강, 그리고 경제활동의 변화*

수행과제명 201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과제책임자 주재선 연구위원
☞ Tel: 02-3156-7192
☞ e-mail: jjs2000@kwdimail.re.kr

요 약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단면조사로써,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을 동태적으로 보여줌. 본 연구는 2007년도 조사이후 여성과 가족, 경제활동 변화와 특징에 대해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1 배경 및 문제점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일자리 경험을 비롯하여,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주재선·문유경·김영택·송치선·박건표·손창균·이건정(2013).201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화, 가족형성 과정과 사건(event)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종단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임.

- 종단면 자료는 횡단면 조사에서 알 수 없는 통계의 내재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여성 지위의 변화와 정책 효과를 더욱 치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줌.

- 2013년 연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된 4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횡단분석 결과를 통해 여성의 삶과 건강, 그리고 경제활동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고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구의 구성

- 4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4명이며,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2세대가구(69.1%), 1세대가구(17.9%), 3세대가구(6.8%), 1인 가구(6.0%) 순으로 많이 분포함.[1)]

- 가구주부부와 자녀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60.3%(4,178가구), 가구주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17.4%(1,208가구)로 높게 나타난다. 조손가정은 0.5%(37가구)로 나타나며, 자녀 없이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은 2.2%(151가구)로 나타남.

〈표 1〉 4차년도 조사가구의 세대구성 분포

(단위: 가구, %)

세대구성	가구수	비율
1인가구	418	6.03
1세대가구	1,243	17.94
가구주부부	1,208	17.44

1)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인가구 비중은 인구총조사(2010)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세대구성	가구수	비율
기타	35	0.51
2세대가구	4,788	69.11
가구주부부+부모(1)	104	1.50
가구주부부+자녀(배우자 포함, 1~)	4,178	60.31
가구주부부+손자녀(배우자 포함, 1~)	24	0.35
가구주+부모(1~)	45	0.65
가구주+자녀(배우자 포함, 1~)	380	5.48
가구주+손자녀(배우자 포함, 1~)	11	0.16
기타	46	0.66
3세대가구	471	6.80
가구주부부+조부모(1~)+자녀(배우자 포함, 1~)	4	0.06
가구주부부+부모(1~)+자녀(배우자 포함, 1~)	326	4.71
가구주부부+부모(1~)+손자녀(배우자 포함, 1~)	2	0.03
가구주부부+자녀(배우자 포함, 1~)+손자녀(배우자 포함, 1~)	67	0.97
가구주+조부모(1~)+부모(1~)	2	0.03
가구주+부모(1~)+자녀(배우자 포함, 1~)	22	0.32
가구주+자녀(배우자 포함, 1~)+손자녀(배우자 포함, 1~)	32	0.46
기타	16	0.23
4세대 이상 가구	8	0.12
가구주부부+조부모(1~)+부모(1~)+자녀(1~)	2	0.03
가구주부부+부모(1~)+자녀(1~)+손자녀(배우자 포함, 1~)	3	0.04
가구주+부모(1~)+자녀(1~)+손자녀(배우자 포함, 1~)	1	0.01
기타	2	0.03
계	6,928	100

주: 부모(1) : 가구주 및 배우자의 부모 중 1인 이상을 의미
자녀(배우자 포함, 1~) : 자녀 혹은 자녀 배우자 중 1인 이상을 의미

▣ 가구의 현재 경제 상태

가구의 총 소득

-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그 외 기타소득을 합한 액수의 월

평균 값(세전소득)으로 계산해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802가구 중 25.3%(1,719가구)가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0.1%(1,364가구)로 나타남. 평균적인 월소득은 330만원으로 나타남.

〈표 2〉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세전)

(단위: 가구, %)

연평균 소득	가구수	비율
150만원 미만	1,315	19.3
150-250만원 미만	1,179	17.3
250-350만원 미만	1,719	25.3
350-500만원 미만	1,225	18.0
500만원 이상	1,364	20.1
계	6,802	100.0

가구별 소득원천

- 6,928가구 중 93.1%(6,453가구)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전소득(26.7%), 사회보험수령액(18.4%), 금융소득(11.1%), 부동산소득(6.1%), 기타소득(3.6%) 순으로 소득원천 보유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 가구소득 원천 유형

(단위: 가구, %)

구분	있었다	없었다	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6,453(93.1)	475(6.7)	6,928(100.0)
금융소득	768(11.1)	6,159(88.9)	6,927(100.0)
부동산소득	420(6.1)	6,508(93.9)	6,928(100.0)
사회보험수령액	1,272(18.4)	5,656(81.6)	6,928(100.0)
이전소득	1,851(26.7)	5,077(73.3)	6,928(100.0)
기타소득	246(3.6)	6,682(96.5)	6,928(100.0)

현재의 부채 잔액규모

- 평균 1,586만원 수준으로 대부분 금융기관 부채 잔액이 평균 1547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의 경제상태

- 전체 6,928가구 중 56.4%가 보통, 25.7%가 조금 어려운 편, 10.2%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세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세대 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 가구의 현재 경제 상태

(단위: 가구, %)

세대유형		매우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계
1인가구		1(0.2)	28(6.7)	195(46.7)	129(30.9)	65(15.6)	418(100.0)
1세대가구-가구주부부		9(0.8)	164(13.6)	715(59.2)	266(22.0)	54(4.5)	1,208(100.0)
2세대 가구	가구주부부+손자녀	0(0.0)	2(8.3)	5(20.8)	10(41.7)	7(29.2)	24(100.0)
	가구주부부+자녀	25(0.6)	441(10.6)	2,457(58.8)	1,037(24.8)	218(5.2)	4,178(100.0)
	가구주+손자녀	0(0.0)	0(0.0)	3(27.3)	3(27.3)	5(45.5)	11(100.0)
	가구주+자녀	0(0.0)	11(2.9)	157(41.3)	131(34.5)	81(21.3)	380(100.0)
	부모+가구주부부	2(1.9)	12(11.5)	61(58.7)	22(21.2)	7(6.7)	104(100.0)
	부모+가구주	0(0.0)	5(11.1)	16(35.6)	15(33.3)	9(20.0)	45(100.0)
3세대 가구	가구주부부+자녀+손자녀	0(0.0)	5(7.5)	35(52.2)	20(29.9)	7(10.5)	67(100.0)
	가구주+자녀+손자녀	0(0.0)	0(0.0)	13(40.6)	14(43.8)	5(15.6)	32(100.0)
	가구주부부+부모+손자녀	0(0.0)	0(0.0)	1(50.0)	1(50.0)	0(0.0)	2(100.0)
	가구주부부+부모+자녀	0(0.0)	29(8.9)	182(55.8)	90(27.6)	25(7.7)	326(100.0)
	가구주+부모+자녀	0(0.0)	0(0.0)	8(36.4)	11(50.0)	3(13.6)	22(100.0)
	가구주부부+조부모+자녀	0(0.0)	0(0.0)	2(50.0)	2(50.0)	0(0.0)	4(100.0)
	가구주+조부모+부모	0(0.0)	0(0.0)	1(50.0)	0(0.0)	1(50.0)	2(100.0)

세대유형		매우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계
4세대 가구	가구주부부+자녀+손자녀	0(0.0)	1(33.3)	2(66.7)	0(0.0)	0(0.0)	3(100.0)
	가구주+부모+자녀+손자녀	0(0.0)	0(0.0)	0(0.0)	1(100.0)	0(0.0)	1(100.0)
	가구주부부+조부모+부모+자녀	0(0.0)	1(50.0)	1(50.0)	0(0.0)	0(0.0)	2(100.0)
계		37(0.5)	708(10.2)	3,907(56.4)	1,777(25.7)	499(7.2)	6,928(100.0)

가계의 지출항목

- 가계의 지출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는 교통통신비, 교육비, 식비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 부담되는 가계 지출항목 순위(복수응답)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수	비율
식비(식료품비)	2,117	16.2
의료비	680	5.2
교육비	2,411	18.4
주거비(관리비, 월세 등)	1,496	11.4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1,331	10.2
주택마련자금을 위한 저축	139	1.1
경조사비	509	3.9
교통/통신비	2,526	19.3
보험료	552	4.2
자녀양육비	8	0.1
자녀결혼자금	5	0.0
부모님 부양비	5	0.0
의류비	4	0.0
세금	3	0.0
경조사비	3	0.0

구분	가구수	비율
기타	14	0.1
없음	1,282	9.8
계	13,085	100.0

▣ 여성 개인 삶의 변화와 특징

● 결혼만족도

- 결혼생활 행복감을 10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6.68점으로 집계됨.
- 취업여부별로는 취업 여성의 남편에 대한 행복감이 비취업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결혼생활 행복감은 7.13점으로 비취업 여성의 6.66점에 비해 0.47점 높음.

〈표 6〉 여성응답자의 특성별 결혼 만족도(10점 만점)

(단위: 점수)

구분		평균
연령	30대 이하	6.68
	40대	7.00
	50대	6.82
	60세 이상	6.41
학력	중졸 이하	6.28
	고졸	6.64
	전문대졸 이상	6.13
취업여부	취업	7.13
	비취업	6.66

주: 매우 불행하다가 1점, 매우 행복하다가 10점 기준

● 남편과의 결혼생활

- 기혼여성 중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여성에 한해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해 조사함.

-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한다.’, ‘남편과 견해가 비슷하다.’,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 네 문항 중 긍정 비율(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남편을 신뢰’하는 비율이 91.2%로 가장 높고, ‘부부생활에 만족’이 80.4%, ‘대화를 많이’하는 비율이 75.2%, ‘견해가 비슷하다’가 68.8%로 나타나, ‘견해가 비슷하다’가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긍정적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7〉 남편과의 결혼생활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821(13.8)	3,659(61.4)	1,335(22.4)	147(2.5)	5,964(100.0)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487(8.2)	3,612(60.6)	1,451(24.3)	4126.9)	5,964(100.0)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583(9.8)	4,213(70.6)	1,042(17.5)	122(2.0)	5,964(100.0)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	1,249(20.9)	4,195(70.3)	457(7.7)	61(1.0)	5,964(100.0)

남편과의 갈등 해결 방식

- 남편과 얼마나 자주 심각한 의견 갈등을 겪고 있는 지 조사함.
- 물리적 폭력의 경험률을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비율은 한 번도 없다가 64.2%, 거의 없다가 32.4%이며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비율은 한 번도 없다가 65.8%, 거의 없다가 30.9%로 대부분은 없는 편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자주 있다와 항상 그렇다의 비율이 ‘내가 상대방에게’는 0.4%, 0.2%, ‘상대방이 나에게’는 0.4%, 0.3%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특별한 추적과 관심이 요구됨.

〈표 8〉 배우자와의 심각한 의견 갈등 경험

(단위: 명, %)

구분	한 번도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그렇다	계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힌다	551 (9.2)	2,053 (34.3)	2,551 (42.8)	660 (11.1)	147 (2.5)	5,964 (100.0)
배우자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232 (3.9)	1,158 (19.4)	2,856 (47.9)	1,441 (24.2)	275 (4.6)	5,964 (100.0)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1,852 (31.1)	2,818 (36.8)	1,142 (19.1)	131 (2.2)	19 (0.3)	5,964 (100.0)
내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3,827 (64.2)	1,934 (32.4)	164 (2.7)	26 (0.4)	11 (0.2)	5,964 (100.0)
상대방이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3,926 (65.8)	1,841 (30.9)	155 (2.6)	25 (0.4)	15 (0.3)	5,964 (100.0)

주: 1) 모름/무응답 2명은 결측 처리
2) 지난 1년간 갈등 경험

별거 또는 이혼

- 4차년도 여성응답자 7,658명 중 기혼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총 89.5%(6,856명)이고 그 중 기혼상태인 여성응답자는 5,964명(77.9%), 이혼 260명(3.4%), 별거 51명(0.7%). 사별 581명(7.6%)임. 이들 중 지난 조사 이후 별거 또는 이혼을 경험한 응답자는 별거 7명, 이혼 38명임.
- 별거하고 있는 여성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율이 31.4%임에 비해 이혼여성은 45.8%로 이혼여성에게서 미성년 자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동거여부를 보면 별거의 경우 본인이 86.4%, 이혼은 81.9%로 대부분 여성이 동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혼 시 양육권은 여성 본인이 80.8%를 갖고 있어 별거나 이혼 시 미성년 양육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여성이 갖고 있음을 보여줌.

〈표 9〉 별거 또는 이혼 시 미성년 자녀 돌봄

(단위: 명, %)

구분		별거	이혼
미성년 자녀 유무	있다	16(31.4)	119(45.8)
	없다	35(68.6)	140(53.8)
미성년 자녀와의 동거	본인	19(86.4)	149(81.9)
	(전)남편	2(9.1)	31(17.0)
	기타 (전 남편의 부모 등)	1(4.5)	2(1.1)
양육권	본인	-	147(80.8)
	전남편	-	35(19.2)

자녀 돌봄

-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주된 양육자를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아동의 어머니'라고 응답한 취업자는 533명으로 취업 상태이면서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전체 665명 중 80.2%임.

〈표 10〉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미취학 자녀의 주된 양육자

(단위: 명, %)

구분		취업	비취업
아동의 어머니		533(80.2)	913(95.0)
아동의 어머니 이외 주된 양육자	아동의 조부모	125(18.8)	45(4.7)
	그 외 친인척	4(0.6)	2(0.2)
	고용된 베이티시터나 가사도우미	1(0.2)	0(0.0)
	아이돌보미	2(0.3)	1(0.1)
계		665(100.0)	961(100.0)

- 첫 번째 자녀의 경우 취업자는 16.4만원을 월 평균 지불하고, 비취업자는 8.0만원을 지불해 비취업자는 취업자의 절반 정도 비용

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 자녀의 경우 취업자는 16.3만원, 비취업자는 1.3만원 지불함.
- 세 번째 자녀는 취업자 47.5만원, 비취업자 3.5만원을 지불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취업여부에 따른 지불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표 11〉 미취학 자녀의 어머니 이외 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월 평균 비용

(단위: 명, 만원)

자녀 수	취업여부	빈도	평균 비용	표준 편차
첫 번째 자녀	취업	96	16.4	25.80
	비취업	30	8.0	21.24
두 번째 자녀	취업	32	16.3	28.93
	비취업	16	1.3	5.00
세 번째 자녀	취업	4	47.5	58.52
	비취업	2	3.5	4.95

현재 건강 상태

- 스트레스 사회적 요인 중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에 (매우 혹은 조금)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3.5%로 나타나고,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대해서는 42.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 관계적 요인 중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에 (매우 혹은 조금)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0.0%로 나타나고,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에는 17.3%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 관리 요인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에 (매우 혹은 조금)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7%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푼다'에

대해서는 51.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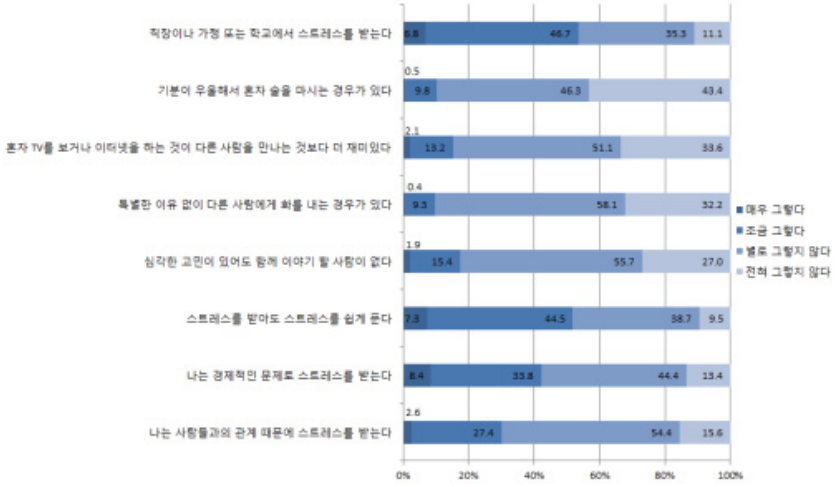

[그림 1] 지난 1주 동안 느낌이나 행동에 관한 비율

우울증

- 우울증의 보편적 척도인 CES-D의 축약형 10 문항 합계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데[2] 여성 응답자 중 59.2%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2〉 CES-D 점수에 따른 우울증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우울감이 없다 (CES-D 10점 이하)	2,728	40.8
우울감이 있다 (CES-D 10점 이상)	3,954	59.2
계	6,682	100.0

2) Allison Galbraith, 2010. www.actonmedical.com/documents/cesd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 비율이 45.8%로 나타나고 이 중 96.7%가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받았다고 응답해 3.3%는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이유(45.2%), 의료기관이 멀어서(24.3%),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해서(8.7%), 시간이 없어서(8.7%), 직장 일이 많아서(5.2%), 거동 불편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2.6%), 증세가 경미해서(2.6%),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0.9%)가 꼽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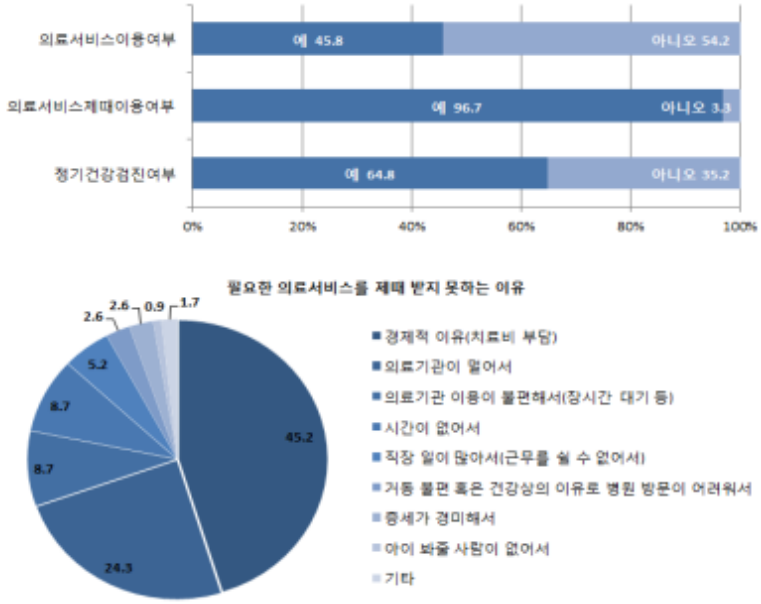

[그림 2]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여성 일자리의 변화와 특징

현재의 경제활동

- 여성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종사상지위별 분포[3]를 보면, 임금근로

자가 52.5%로 취업자 중 비중이 가장 높고 자영업자(21.9%),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19.0%)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종사상 지위 중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비율은 5.0%로 취업자 중 비중은 높지 않지만, 3차년도 조사(2.9%)와 비교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분포에서는 여성 관리자의 비중이 취업자의 0.3%로 아주 낮은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농림업 숙련 종사자가 각각 19.1%와 18.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의 비율은 15.9%와 15.6%를 기록해 3차년도 조사와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돼 있음.

〈표 13〉 취업자 일자리 유형 및 직업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202	52.5
	자영업자	920	21.9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795	19.0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미만)	69	1.6
	특수고용직종사자	208	5.0
	계	4,194	100.0
직업	관리자	11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94	19.1
	사무 종사자	467	11.2
	서비스 종사자	662	15.9
	판매 종사자	650	15.6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785	18.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6	3.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3	3.2

3) 주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는 일반적으로 비취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이들 집단을 취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구분		빈도	비율
	단순노무 종사자	504	12.1
	계	4,162	100.0

주: 직업분포에서 미상은 제외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0.3만원임.
- 교육정도별로 전문대학 이상이 180.4만원으로 중학교 이하(85.3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음.
- 연령별로는 직접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30대 이하에서 158.5만원으로 가장 높고 미혼의 월평균임금이 168.8만원으로 기혼보다 평균 35.5천원 더 많음.

〈표 14〉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명)

구분	범주	월평균임금	사례수	표준편차
학력	중학교 이하	85.3	431	42.0
	고등학교	122.1	809	66.7
	전문대학 이상	180.4	958	101.7
	계	140.3	2,198	88.9
연령	30대 이하	158.5	846	75.9
	40대	146.8	777	98.2
	50대	123.2	363	93.2
	60세 이상	73.4	213	47.8
혼인상태	미혼	168.8	433	72.8
	기혼	133.3	1,766	91.0

비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업자와 고용주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함.

- 4차년도 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는 1,784명이며, 이중 48.4%가 무급가족종사자이고 51.6%가 고용주이거나 자영업자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남편 명의의 사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경영관리를 포함한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의 자영업자 비중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1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고용주이거나 자영업	920	51.6
무급가족종사자	864	48.4
계	1,784	100.0

- 사업체를 경영·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한 달 평균 수입은 150.4만원으로 임금근로자(140.3만원)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별로 전문대학 이상(205.3만원)에서, 연령별로 40대(203.0만원)에서, 그리고 혼인상태로 미혼자(179.9만원)에서 월평균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6〉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수입

(단위: 만원, 명)

구분	범주	월평균수입	사례수	표준편차
학력	중학교 이하	87.4	365	75.9
	고등학교	181.2	290	150.1
	전문대학 이상	205.3	257	145.5
	계	150.4	912	134.7

구분	범주	월평균수입	사례수	표준편차
연령	30대 이하	182.9	129	110.1
	40대	203.0	292	168.2
	50대	135.2	285	110.4
	60세 이상	76.8	206	75.1
혼인상태	미혼	179.9	47	103.1
	기혼	148.8	865	136.1

특수고용근로자

- 특수고용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은 158.0만원으로 임금 혹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전문대졸 이상 여성이 194.6만원으로 중졸 이하 여성(101.6만원)에 비해 1.9배 이상의 소득을 보이고 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178.4만원으로 가장 많음.
-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이 181.7만원으로 기혼(156.7만원)에 비해 25.2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고용근로자는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수입을 보여 30인 이상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173.6만원을 받는 반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129.8만원으로 월 평균 43.8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특수고용근로자의 월평균 수입

(단위: 만원, 명)

구분	범주	월평균수입	사례수	표준편차
학력	중학교 이하	101.6	33	58.2
	고등학교	152.9	108	154.9
	전문대학 이상	194.6	66	125.0
	계	158.0	207	137.4

구분	범주	월평균수입	사례수	표준편차
연령	30대 이하	156.6	48	90.7
	40대	178.4	94	177.8
	50대	138.0	48	95.4
	60세 이상	105.6	17	40.0
혼인상태	미혼	181.7	12	46.1
	기혼	156.5	195	141.0
사업체 규모	10인 미만	129.8	28	74.0
	10인 이상 30인 미만	156.4	98	157.0
	30인 이상	173.6	76	130.1

구직자

- 4차년도 조사 응답자 중 현재 일자리가 없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1주에 18시간 미만 일한 여성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3.8개월로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중졸 이하 여성의 평균구직기간이 2.4개월로 비교적 짧은 반면, 고졸 여성은 3.9개월, 전문대졸 이상 여성은 4.1개월의 평균 구직기간을 보이고 있음.
-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여성이 평균 5.3개월 구직활동을 해 기혼 평균 3.1개월에 비해 2.2개월 더 긴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구직활용소요기간

일-가정 양립

- 모든 취업 여성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한 결과,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을 하는 것은 내게 보람과 활력을 준다'와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긍정적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0.8%와 84.4%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혹은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항목에서의 비율은 각각 34.8%와 23.9%만이 긍정적인 동의(매우그렇다+대체로 그렇다)를 한 것으로 나타남.

〈표 18〉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

(단위: 명, %)

애로사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958(22.8)	2,856(68.0)	356(8.5)	28(0.7)	4,198(100.0)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708(16.9)	2,834(67.5)	624(14.9)	32(0.8)	4,198(100.0)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	762(18.2)	2,853(68.0)	554(13.2)	29(0.7)	4,198(100.0)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440(11.5)	2,214(57.9)	917(24.0)	252(6.6)	3,823(100.0)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134(3.2)	1,325(31.6)	1,859(44.3)	880(21.0)	4,198(100.0)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85(2.0)	921(21.9)	2,165(51.6)	1027(24.5)	4,198(100.0)

-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부양의 책임감과 가족의 지지가 직장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와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항목에 여성은 각각 65.5%와 75.1%가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
-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와 '집안 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은 각각 32.4%와 32.9%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도 10.9%로 매우 낮음.

〈표 19〉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

(단위: 명, %)

애로사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계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669 (15.9)	2,084 (49.6)	931 (22.2)	163 (3.9)	351 (8.4)	4,198 (100.0)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541 (12.9)	2,611 (62.2)	932 (22.2)	114 (2.7)	-	4,198 (100.0)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209 (5.0)	1,151 (27.4)	1,190 (28.3)	529 (12.6)	1,119 (26.7)	4,198 (100.0)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122 (2.9)	1,260 (30.0)	1,820 (43.4)	996 (23.7)	-	4,198 (100.0)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33 (0.8)	425 (10.1)	922 (22.0)	864 (20.6)	1,954 (46.5)	4,198 (100.0)

직장 내 성차별

- 4차년도 조사 이후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겪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대상자의 0.7%만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이는 3차년도 성희롱 경험 조사(1.2%)와 비교해 약간 하락한 비율임.

〈표 20〉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겪은 적이 있다	18	0.7
겪은 적이 없다	2,714	99.3
계	2,732	100.0

- 직장의 채용이나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차별 유형 중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와 같이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던 차별은 업무배치에 대한 차별임.
- 업무배치에 대한 차별은 22.1%가 직장 내에서 존재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급여차별 18.8%, 승진시 차별 17.3%, 채용시 차별 16.8%, 구조조정 시 차별 15.4% 순으로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음. 교육연수기회차별은 1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직장 내 차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1〉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애로사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채용시 차별 (사람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29 (1.2)	382 (15.6)	1,215 (49.5)	830 (33.8)	2,456 (100.0)
승진시 차별 (경력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 직원보다 많은 편이다)	31 (1.3)	392 (16.0)	1,199 (48.8)	834 (34.0)	2,456 (100.0)
급여 차별 (직급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 직원보다 많은 편이다)	35 (1.4)	427 (17.4)	1,156 (47.1)	838 (34.1)	2,456 (100.0)
업무배치 차별 (남자직원이 하는 일과 여자직원이 하는 업무가 고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76 (3.1)	467 (19.0)	1,114 (45.4)	799 (32.5)	2,456 (100.0)
교육연수기회 차별 (비슷한 업무를 해도 남자 직원이 여자직원보다 교육이나 연수받을 기회가 더 많다)	23 (0.9)	314 (12.8)	1,241 (50.5)	878 (35.7)	2,456 (100.0)
구조조정시 차별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22 (0.9)	355 (14.5)	1,204 (49.0)	875 (35.6)	2,456 (100.0)

모성보호제도

- 4차년도 응답여성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휴가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는, 산전후휴가를 잘 모르거나 모르는 비율이 2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육아휴직을 모르는 비율('잘 모른다'+'모른다')도 23.4%임.
- 3차년도 조사에서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비인지정도가 23.6%와 21.2%인 것과 비교해 오히려 약간 상승한 것으로, 모성보호 휴가제도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일종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사산

휴가의 인지정도는 35.5%,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편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는 67.5%와 64.3%로 70%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표 22〉 모성보호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

모성보호제도	잘 알고 있다	아는 편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산전후 휴가	1,476(19.3)	4,124(53.9)	1,744(22.8)	314(4.1)	7,658(100.0)
유사산 휴가	645(8.4)	2,075(27.1)	3,608(47.1)	1,330(17.4)	7,658(100.0)
육아휴직	1,475(19.3)	4,390(57.3)	1,517(19.8)	276(3.6)	7,658(100.0)
배우자 출산 휴가	1,177(15.4)	3,991(52.1)	2,153(28.1)	337(4.4)	7,658(100.0)
남편 육아 휴직	1,117(14.6)	3,803(49.7)	2,312(30.2)	426(5.6)	7,658(100.0)

- 모성휴가 제도를 활용한 여성의 대부분은 이 제도를 활용한 후 고용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산전후 휴가를 보내고 직장에 복귀한 여성 중 고용변동이 있었던 여성은 전혀 없고, 육아휴직의 경우 72명 중 2명만이 고용변동이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23〉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후 고용 상 변동 유무 및 형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산전후휴가	고용 변동 있다	0	0.0
	고용 변동 없다	23	100.0
	계	23	100.0
육아휴직	고용 변동 있다	2	2.8
	고용 변동 없다	70	97.2
	계	72	100.0

- 지난 조사 이후 육아휴직 경험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자격요건이 되지 않은 여성을 제외하고, 60명 중 18명이 '규정에 있지만 대체 인력을 회사가 찾지 못

해서’라고 응답하고 있음.

- 또 16명은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과반이상이 대체인력이 없거나 관례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실직의 위험 때문에’와 ‘육아휴직 규정이 없어서’로 응답한 여성은 각각 6명으로 나타남.

〈표 24〉 육아휴직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서 (비정규직, 자격요건이 안 돼서 등)	2,070	97.2
규정에 있지만 대체 인력을 회사가 찾지 못해서	18	0.8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16	0.8
실직의 위험 때문에	6	0.3
회사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서	6	0.3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가 줄기 때문에	8	0.4
회사에 육아휴직 규정이 없어서	6	0.3
계	2,130	100.0

주: 무응답 제외

3 정책제언

- 여성가족패널에서는 1인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자녀가 없는 부부가정, 대가족, 그리고 결혼상태에 따라 이혼, 동거, 사별 등에 직면한 다양한 가족 등의 모습을 담고 있음. 이에 다양한 여러 가족의 세분화된 특성을 파악하여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2세대가구(69.1%), 1세대가구(17.9%), 3세

대가구(6.8%), 1인 가구(6.0%) 순으로 많이 분포하며, 세부구성을 살펴보면 가구주부부와 자녀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60.3%(4,178가구), 가구주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17.4%(1,208가구)로 높게 나타남. 조손가정은 0.5%(37가구)로 나타나며, 자녀 없이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은 2.2%(151가구)로 나타남.

-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취업여부에 따라 미취학 자녀의 주된 양육자 비율을 보면, 취업한 응답자 중 0.3%, 비취업 응답자 중 0.1%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 현황 파악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여성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시에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생애주기 혹은 성별로 의료서비스 수요와 활용패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여성의 경우, 경제적 이유(45.2%), 의료기관이 멀어서(24.3%),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해서(8.7%) 등의 이유로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제때 의료기관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취학 아동이 있거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젊은 여성층의 의료서비스 접근 실태를 살피고, 사회적 고립정도를 중요변수로 설정하여 세부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후 고용 상태 변동 여부 및 원인을 파악해야 함.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산전후휴가를 잘 모르거나 모르는 비율이 2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육아휴직을 모르는 비율('잘 모른다'+'모른다')도 23.4%였음. 따라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홍보 및 정책 보완이 필요함.
  - 더불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후 고용 변화를 겪는 비율도 점

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여전히 직무변경, 사직권고 등의 직간접적인 고용 변동을 겪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와 제37조(벌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5%이상의 여성은 채용과 승진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모성보호제도 활용 후 고용 변화를 겪은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4 기대효과

- 가족의 변화 파악과 치밀한 가족정책수립
- 여성정책의 핵심적 사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수립

참고자료

주재선·문유경·김영택·송치선·박건표·손창균·이건정(2013).201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